

-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- 제21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소집한다.
  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  - 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소위원회)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23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5 장 보 칙

- 제25조(준용)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6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 법령의 적용) 이 조례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인용한 규정은 2003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을 적용한다
  - 1. 제4조제2항제4호 중 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”은 “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  - 2. 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”은 “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”으로 한다
  - 3. 제12조제1항제3호 중 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”은 “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”으로 한다.
  - 4. 제14조제1항 중 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”을 “도시재개발법”으로 한다.
- ③(뉴타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길음, 은평, 왕십리 뉴타운지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뉴타운지구로 본다.

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

지구단위구역내에 포함된 강동구 성내동 202-21번지 434㎡는 사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2호,7호 규정에 의거 매수신청자인 (주)리얼리치개발에 수의매각 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.

- 관리계획변경계획 계상재산
  - 처 분
    - 토지매각 1건 : 1필지 434㎡ (131.3평)



##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요약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위: m<sup>2</sup>, 원)

구	분	변경		내역	세	부	내	역
		건수	면적					
계	토지	1	434.0	913,787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매각	토지	1	434.0	913,787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양여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교환 처분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○ 성내동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2호, 7호 규정에 의거 매수신청자인 (주)리얼리지개발에 수익매각하고자 함								

### 처분대상재산목록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위:㎡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의표시			지목	일단의면적	처분대상 면적	·예정가격 (공시지가)	처분 시기	처분사유 및 근거법령	매수희망자 주소, 성명	처분구분
	구	동	번지								
계											
1	강동구	성내동	202-21	대지	434.0	434.0	913,787	2008년	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 제25호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2호, 제7호	㈜리얼리치개발 대표 이창수	수의매각